

## 원격수업 및 원격강좌 운영 규정

제 정 : 2011. 06. 01.

### 제6조(취득학점 제한)

- ① 본교 학생은 타 대학에서 개설한 강좌를 포함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제한하며 재학 기간 동안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총 3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(K-MOOC)는 제외한다.[2017.02.08.개정][2018.01.17.개정, 2024. 9. 4.]
- ②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(K-MOOC)를 이수한 경우, P/F 과목 1학점으로 인정하되, 한 강좌의 총 수업 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.[2018.01.17.신설]
- ③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(K-MOOC)는 이수 과목 수에 관계없이 1학점만을 인정하며, 교양선택 제8영역(철학과 융복합)으로 한다.[2018.01.17.신설]
- ④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학년별 취득학점의 30%를 초과할 수 없다. <신설 2025. 7. 15.>